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05
----------	-------

발의연월일 : 2025. 11. 13.

발 의 자 : 송재봉 · 허성무 · 박홍근
임호선 · 강준현 · 황명선
이재관 · 이주희 · 이광희
이훈기 · 김우영 · 이수진
이용선 · 박정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변화대응지원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은 WTO 및 FTA와 같은 기존 다자·자유무역 중심의 통상질서에서 벗어나 각 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개별 국가의 통상조치 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음. 앞으로 이러한 조치들의 시행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통상협정 뿐 아니라 상대국의 자국법에 근거한 일방적인 통상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수단을 보완하여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등).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을 “통상조약”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

나.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판로확보 지원)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u>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통상조약</u> ----- ----- ----- ----- ----- -----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조약 등”이란 「 <u>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u>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 산</u>	제2조(정의) ----- ----- 1. ----- <u>다음</u> <u>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u> ----- ----- ----- -----.

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
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2. 3. (생 략)

<신 설>

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
·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
나.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
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

2. 3. (현행과 같음)

제8조(판로확보 지원) 정부는 통
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
다.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
· 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
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u>업</u>	
--	----------	--